







보도자료



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, 기획재정부 국제통화협력과			
책 임 자	안창국 과장 이병연 과장	담 당 자	이진영 사무관 (02-2156-9892) 구교은 사무관 (044-215-8732)	
배 포 일	2015.9.11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6매

제 목: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

- ◇ 한국은 9.11(금) 호주, 일본, 뉴질랜드, 태국, 필리핀과 함께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(Asia Region Funds Passport) 양해서에 서명
- ◇ 한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기대
- 특히,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편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편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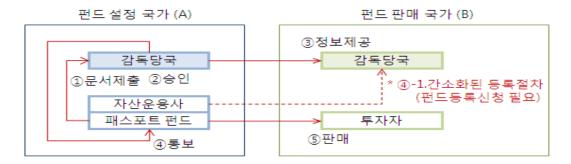
1. 양해서 서명: '15.9.11, APEC 재무장관회의

- □ 정부는 9.11(금)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(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)에서 호주, 일본, 뉴질랜드, 태국,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(SoU*)에 서명하였음
 - * Statement of Understanding :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재무부간 양해서
- 패스포트 참여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편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펀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

- □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,
 -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^{*}이 포함된 양해각서 (MoC**)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함
 - * 패스포트펀드 진입/운용규제, 감독권한 등, ** Memorandum of Cooperation

※ 펀드 패스포트 개요

○ [개념] 펀드의 진입/운용규제 등에 대한 **공통된 규범을 마련**하고 **이를 채택** 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



- * (예) 한국펀드 → 호주투자자에게 판매
 -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·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\rightarrow ② 금감원은 심사·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\rightarrow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\rightarrow ④ 호주 감독 당국은 판매·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
- [역외펀드와 비교]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, 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"역외펀드"와 차이
- (**판매대상펀드**)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하지만, 패스포트는 **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**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
- (**판매국 등록절차**)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, 운용규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지만, 패스포트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**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**

2. 그간의 경과

- □ '10.9월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단일 편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논의를 최초로 제안
- □ '13.9월, APEC 재무장관회의시 한국·호주·뉴질랜드·싱가포르는 편드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
 -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그룹을 통해 **편드 패스포트 도입 관련 구체적 준비작업을 진행**하자는 내용(참여 기속은 아님)

- □ '14.4월, 펀드 패스포트 실무그룹은 패스포트펀드·운용자의 요건, 감독권한 등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안(consultation paper)을 마련
 - 정부는 관계기관 T/F^{*}를 구성하여 실무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업계·전문가 등과 함께 한국의 참여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^{**}를 지속
 - * 금융위, 기재부, 금감원, 자본연, 예탁원,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
 - ** 全운용사 찬반여부 및 공통규범 관련 의견 조사(총 3차례(14.8월, 15.4월, 15.8월)) 금융위·기재부 공동 업계 간담회 개최(15.7.14일, 8.25일) 등
- □ '15.9월, 정부는 **국가별 논의 동향***과 **업계 의견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한국의 **편드 패스포트 참여**를 결정하고, 금번 **양해서 서명**에 참여
 - * 기존에는 호주·뉴질랜드·싱가포르만 관심 → 최근 일본·태국·필리핀이 추가로 참여 확정 (단, 싱가포르는 금번 SoU에는 미참여하되 패스포트 논의에는 지속 참여 예정)

3. 펀드 패스포트 참여 의의 및 기대효과

- Ⅱ 투자자의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가 확대
 - **펀드상품 선택폭이 확대**되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**다양한 펀드 투자**가 가능하고 **수익률 제고** 효과가 기대
 - 국가간 상호 인증된 펀드상품 출시로 개인의 **해외투자 수요에 적극**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
- ②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
 -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
 - 펀드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**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** 선도해 나감으로써 **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**로 활용
- ③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을 선도
 - 펀드시장 통합을 통해 **아시아 금융협력**과 **금융시장 통합**에 기여
 - 아시아 지역내 **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**하여 역내 **지역자금 선순환**을 도모하고 **역내 금융위기 상황에서 완충작용 역할**도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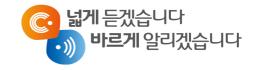
④ 자산운용업 관련 규범 제정자로서 선점효과

- 규범 제정단계부터 rule-setter로 참여하여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확대시 시장을 선점
- **펀드 패스포트 활성화**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**APEC 지역내 펀드 설정의 중심지로 발전**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 가능

4. 향후 대응방안

- □ 양해각서(MoC)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,
 - 호주·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참여국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
- □ 아울러,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
 - ①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마련
 - * 예) ① 참여국가별 표준 매뉴얼 개발·진출전략 수립, ②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, ③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·개선
- ② 펀드 패스포트와 연계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
- ③ 참여국간 펀드거래 표준화 등 펀드 관련 글로벌 규범과 기준 마련을 주도하고, 향후 논의가 적극 진행될 청산·결제 등 인프라 구축 논의를 선도*하여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
 - * 예탁결제원 주도로 11개국 중앙예탁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펀드거래 표준화를 위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발족 예정('15.11)





참고 1

아시아 펀드패스포트(Asia Region Funds Passport) 제도 개요

- □ (기본구조)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설정·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
 - (설정국 감독당국) 편드 운용사 요건과 운용관련 규범^{*}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(공모펀드만 대상)
 - * 자기자본 및 수탁고 등 운용사 요건 & 분산투자 및 자산평가 등 펀드운용 요건은 대체로 **설정국 규범과 공통규범이 동시 적용**
 - (판매국 감독당국) 투자자보호 등 펀드판매 관련 규범^{*}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판매가능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(21일 이내)
 - * 공시 및 이의제기 등 판매 관련 규범은 판매국 법규가 준용됨
- □ (감독권한) 설정국 감독당국은 (i)설정국 법률과 (ii)패스포트 룰에 따라 감독하되, 판매 관련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
 - **설정국과 판매국 감독당국** 모두 패스포트 펀드의 **판매를 정지**시킬 수 있는 권한 보유, **등록취소**는 **설정국**에서만 가능
- □ (유사 해외사례) 펀드패스포트와 유사한 사례로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'85년 도입된 유럽의 UCITS*가 대표적
 - *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
 - UCITS 펀드의 경우 설정국에 등록되면 다른 회원국에서의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판매 가능한 '상호인증제도'
 - 판매국 등록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**펀드 패스포트 보다 진일보한 제도**

- < ※ 유럽 UCITS >

- UCITS 지침*은 '85년 유럽위원회가 펀드에 대한 공통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회원국간 펀드 판매시장 단일화를 목적으로 제정
 - * 개방형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등록, 인가, 투자자산, 감독,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
- → '14년말 기준 유럽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약 11조 유로로, 이중 UCITS 펀드가 약 70%를 차지

<mark>참고 2</mark> │ APEC 장관회의시 체결한 양해서(SoU) 주요내용

- □ (개요) 패스포트 참여의사 등을 표명하는 재무부간 양해서
- □ 주요 내용
 - (서문) 역내 자본시장·자산운용산업 발전, 자금의 선순환, 투자기회 다양화, 금융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 패스포트 목표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
 - (경과) 신의성실에 따라 패스포트 기본원칙과 규범을 발전시킴
 - (참여) 패스포트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
 - (MoC) MoC의 서명이 국가별 관할당국에 의하여 수행 될 것을 명시
 - (향후 협력) 향후 패스포트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의 마무리를 위하여 국가 간 협력
 - (참여국) 최초 참여국이 아니어도 다른 APEC 회원국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더욱 포용적인 이니셔티브로 발전하길 기대
 - (의향서 대체) 동 양해서(SOU)는 '13년 9월 인니에서 체결한 의향서
 (SOI, Statement of Intent)를 대체
 - (법적 구속력) 동 양해서는 서명국의 이해를 표명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음